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6 - 351호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12.30.) 제5조의2에 따라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3호 라목의 규정은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계약한 건에 적용한다.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서비스 제공명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 2. 서비스 목적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서비스 내용

## 가. 서비스 범위

1)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12.30.) (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에 의한다.

### 나. 서비스 절차

- 1)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 고시 별표 4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기침유발기를 임차하여 기침 유발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 2) 이 경우,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제공업소"라 한다)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비 고시 별표 4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입자 등이 요양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기침유발기)와 고시 별지 제2호의3서식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기침유발기 처방전은 처방을 받은 월에 한해 제출

## 다. 서비스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1) 요양비 고시 별표 6 제2호바목, 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사목에 따라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의 기준금액은 16만원/월(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고, 기준금액 중 소모품비에는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1개월에 1개를 포함한다.

# 2) 지급기준

- 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 받은 경우 : 해당 대여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준금액과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 라) 월 중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 달의 1일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달의 요양비를 지급한다.

# 라. 제공업소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

1) 제공업소의 요양비 고시 별표 4의4에서 정한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비 기준

- 기침유발기는「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의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A39010.02)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 할 수 있는 기기이어야 한다.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와 관련한 소모품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 나) 서비스 내용

- 제공업소는 매월 1회 기침유발기, 소모품 등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환자관리카드를 제공업소와 환자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비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기침유발기의 흡기 및 호기의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압력 이상 등의 경우 경보기능 작동 여부, 환자 사용상태 등을 방문하여 확인 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및 환자관리카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소모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기침유발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서비스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365일 24시간 콜센터
    - 콜센터 등 확실한 대응자가 있고, 관련된 담당자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 불인정)
  - 나) 성능검사 실시 및 장비 보유 기준
    -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전 반드시 상태, 성능의 기기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여 출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성능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의료용 소독제 및 청소를 위한 콤프레셔를 보유하여야 한다.
  - 다) 기침유발기 보관 장소 기준
    - 기침유발기는 의료용 치료보조기구로서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업소는 별도의 청결한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 기기 소재 · 이력관리
    - 확실한 점검과 이용 불편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기 소재·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4. 제공업소 등록, 변경, 탈퇴 등

## 가. 제공업소 등록신청

고시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소는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서 별지 제2호 서식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업소는 업소 등록과 함께 별첨1호, 별첨2호 서식을 기재하여 기침유발기 기기를 등록 하여야 한다. (다량의 자료 시 별첨2호는 엑셀파일도 함께 제출)

## 나. 제공업소 및 제품 변경신청

고시 제5조의2제4항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의 일반현황, 제품관련(기기 등록, 기기 변경 등)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기침 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제공업소 탈퇴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다.

## 라. 등록취소

공단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고시 별표 4의4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마. 등록증 발급

공단은 등록 신청한 업소가 고시 별표 4의4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 사후관리 등

공단은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요양비 고시 별표 4의4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조사·점검할 수 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거짓이나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 다. 기기 등이 공단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마.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바. 기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발생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6.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 등이 효과적인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업소의 서비스내용과 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